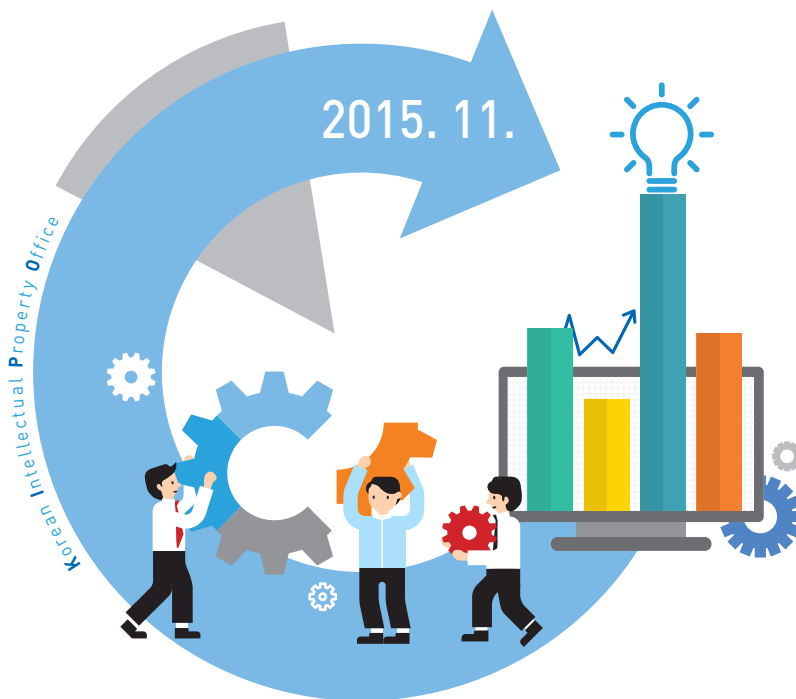


2015 특허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15선





2015 특허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15선

ontents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01	정부예산 지원으로 창출된 특허의 개발기관 소유원칙 타부처 확산	4
	산업재산정책과	
02	특허권자 등의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지원	6
	정보고객정책과, 산업재산정책과	
03	심사착수 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8
	특허심사제도과	
04	재거절결정 건의 심판처리기간 지연 개선	10
	심판정책과	
05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요건 폐지 및 완화	12
	디자인심사정책과	

06	특허권(디자인권) 자진 포기시 잔여 등록료 반환	14
	등록과	
07	정당한 권리자 출원 구제기간의 제한 폐지	16
	특허심사제도과	
08	출원서류 반환 절차 마련	18
	출원과	
09	특허 분할출원 기회 확대	20
	특허심사제도과	
10	민간기업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허용	22
	산업재산활용과	
11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절차 개선	24
	특허심사제도과	
12	손해배상 관련 특허권자 입증 부담 완화	26
	산업재산보호정책과	
13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28
	특허심사제도과	
14	중소기업, 특허 연차 등록료 부담 완화	30
	정보고객정책과	
15	국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한·미 특허 공동심사 시행	32
	특허심사제도과	

01

정부 예산 지원으로 창출된 특허의 개발기관 소유원칙 타부처 확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042-481-5423)

Q

창조경제 실현을 지원하고 연구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 부처마다 다른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주체를 통일해야
되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특허에 대한
'개발기관 소유 원칙'을 확립하고
타 부처에 확산하기 위해 각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미래부, 농림수산업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
기 시행



과제 개요

투자활성화

문 제 점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지만 주관연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제 개발기관
(산·학·연)에 대한 보상 미비로 연구자의 연구의욕 저하

관련규정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선 내용

개선 전



정부 연구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소유 주체
관련 규정이 각 부처별로 다름

* (주관연구기관) 미래부, 복지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개발기관) 산업부, 중기청
(국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

개선 후



실제로 연구성과(발명 등)를 창출한 기관이
그에 대한 특허권 소유

- 연구개발 결과물의 개발기관 소유 원칙을 타
부처로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기대 효과

- 실제 기술을 개발한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이 특허를 소유하게 되어 연구
자의 연구개발 의욕 고취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A社(개발기관)와 B社(개발기관)는 E연구소(주관연구기관)와 함께 정부 연구개발사업인 '미래형
자동차 엔진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A社は '엔진부품 신소재', B社は '초경량 엔진블럭', A社
-B社-E연구소는 공동으로 '신형엔진'을 개발하였다.

이전에는 주관연구기관인 E연구소가 '엔진부품 신소재', '초경량 엔진블럭', '신형엔진' 특허를
모두 소유하였으나, '개발기관 소유 원칙'에 의해 '엔진부품 신소재' 특허는 A社 소유, '초경량
엔진블럭' 특허는 B社 소유, '신형엔진' 특허는 A社-B社-E연구소가 공동 소유하게 되고,
A社와 B社は 자발적으로 '엔진부품 신소재'와 '초경량 엔진블럭' 기술에 대해 양산 기술을
추가 개발하여, 국내외에 제품 판매 가능하게 되었다.



02 특허권자 등의 개방특허에 대한 특허료 지원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산업재산정책과 (042-481-8182)

Q

미활용 특허의 중소·중견
기업 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무상으로 특허권을
개방하는 특허권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A

금년 11월부터 특허권
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실시권 설정
시 매년 납부할 연차
등록료 50% 상당액의
지식재산 포인트를 제공하여
등록료 부담이 경감될 예정
입니다.



과제 개요

투자활성화

문 제 점

중소기업은 개방특허를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반면, 특허권자는
인센티브 부족으로 적극적인 참여 미흡

* 무상실시의 경우 실시권 설정에 따른 특허료열티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권리유지를 위해 특허료 납부 필요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개선 내용

개선 전



특허권자의 개방특허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없음

개선 후



특허권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실시권(통상·전용)을 설정할 경우 해당
특허권의 연차등록료를 50% 지원

기대 효과

- 벤처·중소기업이 우수 개방특허를 이용하여 신제품 및 비즈니스 개발 활성화
→ 창조경제 및 경제혁신에 기여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40건의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되었으며, 17개 센터로 확대시 2,000개
이상의 특허가 중소기업에 이전 기대

- 중소기업 제조설비에 공공연구기관 등의 우수 특허를 결합하여 중소기업의
신산업 창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화장품 원료 생산 중소기업의 금대표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이 보유한 주름개선
및 미백 화장품 관련 특허 일곱 건을 무상으로 이전 받아 새로운 기능개선 원료를 생산함으로써
신산업 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무상으로 이전 받는 중소기업은 좋지만 특허권자에게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참여가 미흡했는데 특허청에서 무상 이전 시 특허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제공하게 되면 무상 이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3 심사착수 전 취하·포기 시 심사청구료 반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397)

Q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사업환경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
특허출원을 취하나 포기하고 싶습니다.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특허 심사가 착수되기 전에,
출원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도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특허출원 후,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심사착수 전)에 출원을 취하
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지 못해
출원인에게 불합리

관련규정

특허법 제84조



개선 내용

특허법 개정('15.5.18 시행)을 통해 심사착수 전에 특허출원이 취하·
포기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 심사청구료 전액 반환

개선 전

심사착수 전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만 가능)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출원 취하·포기한
경우에만 심사청구료 반환

개선 후

심사착수 전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도 가능)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심사착수(선행기술조사 결과 납품 포함) 전인
경우 출원 취하·포기시 심사청구료 전액 반환

- * ① 국내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인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 경과 후 취하간주
- ② 변경출원(특허 → 실용신안 등)의 원출원인 경우 변경출원 시 취하간주

기대 효과

- 수수료 부과 취지에 맞게 국민의 입장에서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개선하여
출원인의 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원인들이 연간 약 13억원의 심사청구료 반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

전자부품 개발기업 A사는 새로 개발한 회로소자를 특허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약 6개월
후 기술 특성상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하였다. A사는
특허출원이 아직 심사되지 않아 이전에 납부한 심사청구료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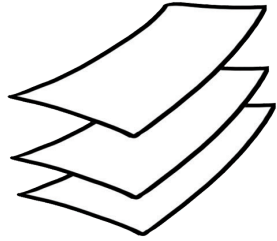


04 재거절결정 건의 심판처리기간 지연 개선

특허청 심판정책과 (042-481-5918)

Q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 취소심결을 받았는데, 심사관이 다른 이유로 재거절 결정하였습니다. 재거절결정된 출원에 대한 심판 청구건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나요?



A

금년 11월부터 '재거절결정건의 불복심판청구'도 우선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심판처리기간이 6개월 내로 단축됩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재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사·심판을 통한 권리화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출원인의 불만 가중

관련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제31조



개선 내용

개선 전

재거절결정된
심판청구



개선 후

재거절결정된
심판청구



일반 심판에 비하여 신속히 심리하는 우선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재거절결정 건에 대한 규정 없음

우선심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사무 취급규정(훈령)을 개정하여 재거절결정의 불복심판이 청구된 사건 추가

기대 효과

- 합리적인 심판제도 개선으로 특허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통상 9개월의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조기 권리화 지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 심판결과를 받았으나, 심사관은 다시 거절결정하였다. A씨는 또 심판을 청구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5년 11월부터는 우선 심판제도를 통해 기존 9개월 이상 걸렸던 심판처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특허권리화에 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05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요건 폐지 및 완화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Q

담당자의 실수로 디자인권이 소멸되었는데,
꼭 실시 중이어야 하고, 해당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해야 권리회복이 가능한지요?



A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등록료의 2배를 납부
하면, 소멸된 디자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실시 중인 디자인권’만 해당되므로 미실시 또는 실시 예정인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회복료의 경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2배를 내게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 야기

관련규정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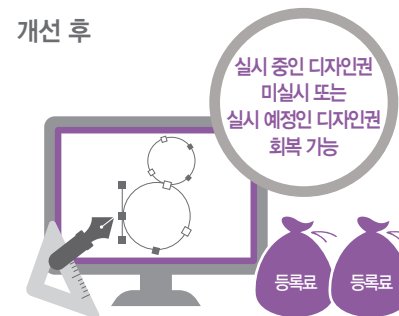
개선 내용

개선 전



- 실시 중인 디자인권만 회복 가능
- 등록료 3배 납부

개선 후



- 실시 중인 디자인권뿐만 아니라 미실시 또는 실시 예정인 디자인권도 권리회복 가능
- 등록료 2배 납부



기대 효과

- 미실시 또는 실시 예정인 디자인권의 권리회복 신청이 가능하고, 권리회복 비용부담이 경감되어 권리회복 신청 증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텐트’ 관련 디자인을 사업화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담당 직원의 실수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디자인이 소멸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소멸권리 회복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 신청했으나 ‘실시중인 디자인’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여 포기하려 했지만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디자인권의 회복이 가능하고 관련 비용도 3배에서 2배로 완화 돼, 중소기업 운영자로서 반가운 조치라 생각한다.

06 특허권(디자인권) 자진 포기 시 잔여 등록료 반환

특허청 등록과 (042-481-5233)

Q

무효심결이 확정된 특허권의 등록료는 반환해 주고 있는데, 특허권을 자진 포기하는 경우에도 등록료를 반환 받을 수 있나요?



A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도 등록료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특허(디자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에 대해 반환해 주고 있으나 특허권(디자인권)자가 스스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등록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특허권(디자인권)자의 입장에서 불합리

관련규정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개선 내용

개선 전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심결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반환

개선 후



특허권(디자인권)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반환

*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 (미 · 일 · EU 등 주요국 사례 X)



기대 효과

- 등록료 반환 규정의 합리화를 통한 특허권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
- 불필요한 권리를 조기에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기술개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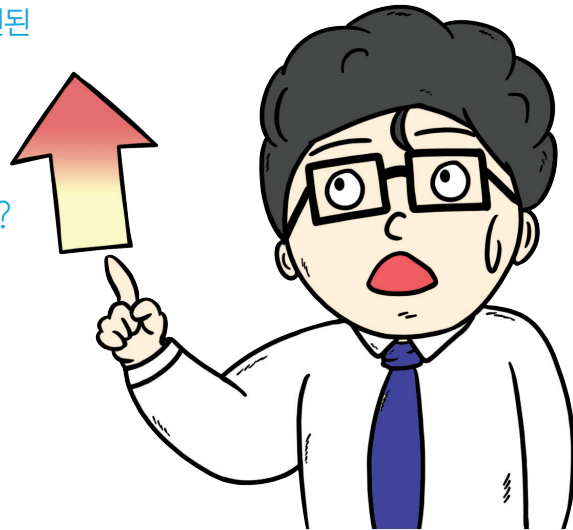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몇 건의 특허를 취득하였고, 이후 일부 특허는 사업가능성이 없어서 권리를 포기하였다. 설정등록시 이미 10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한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다행히도 특허를 포기한 다음해부터는 잔여 등록료를 반환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다.

07 정당한 권리자 출원 구제기간의 제한 폐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397)

Q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특허법 규정('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까지')이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구제기간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요?



A

정당한 권리자 출원을 구제하기 위한
요건 중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까지' 요건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까지'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구제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권리보호 제약

관련규정

특허법 제35조



개선 내용

개선 전



무권리자 특허 → 무효심결 → ① 무권리자 특허의
등록공고 후 2년 & ② 무효심결 확정일부터 30일
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 → 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

개선 후



무권리자 특허 → 무효심결 → 무효심결 확정
일부터 30일까지 정당한 권리자 출원 →
출원일 소급, 특허 획득



기대 효과

•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구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보호
강화

자동차부품 개발자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가 자신이 개발한 연료저감장치를 몰래 특허
출원하여 3년 전에 특허등록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B씨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
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C씨의 특허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받았고,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후 해당 장치에 관해 특허출원을 하였다. 과거에는 C씨의 특허가 등록되지 2년이 지나서 C씨가
출원한 출원일로 소급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출원일도 소급받을 수 있었다.

08 출원서류 반환 절차 마련

특허청 출원과 (042-481-5204)

Q

출원서류를 사정이 생겨
반환받고 싶는데 관련절차가
없나요?



A

걱정마세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출원서류 반환절차가 있습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출원인의 착오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하여도 관련 절차가 없어 반환받지 못하는 불편 발생

관련규정

관련 규정 없음



개선 내용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 제정 ('15.7.1 시행)으로 반환신청 근거규정 마련

개선 전



출원서류 제출 시 반환 절차가 없음

개선 후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15.7.1일부터 방식심사 수리되기 전 반환신청 시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등 총 5종*에 대해 반환 가능

* 반환대상 서류

1.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2.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3. 서류제출서
4. 정보제출서
5. 수수료 사후 감면신청서

기대 효과

- 출원서류 반환절차 마련을 통해 출원인의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특허행정의 편의성 제고



09 특허 분할출원 기회 확대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397)

Q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특허등록이 결정된 이후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한가요?



A

특허등록결정 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여건변화 등으로 특허출원한 발명을 추가로 권리화* 하려고 해도
특허등록결정 후에는 분할출원 불가

* 미국 특허법의 경우,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 등록결정 이후에 계속출원(국내의 '분할출원'과 유사)을 통해 시장에 출시된 '모방품' 또는 '표준'에 맞춰 '권리범위(Claim)'를 수정 가능

※ (분할출원)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 하나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1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하는 것

관련규정

특허법 제52조



개선 내용

특허법 개정('15.7.29 시행)을 통해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일정기간
(최대 3개월) 동안 분할출원이 가능하도록 기회 확대

개선 전



| 분할출원 가능기간 |

1. 명세서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개선 후



| 분할출원 가능기간 |

1. 명세서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 특허등록결정 이후 일정기간(최대 3개월)

기대 효과

-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권리화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변화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및 권리보호 강화



10 민간기업의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허용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042-481-5807)

Q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서비스
신생기업인데 평가실적 없이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정한 인력 및 시설요건만
충족하면 평가실적이 없어도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민간전문기업
2곳을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일자리 창출

문 제 점

현재 공공기관만이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 (발명의 평가기관) IP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으로, 평가 결과는 기술
인증, 기술거래 및 IP 금융 등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 지식재산(IP) 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IP 가치평가의 민간부문
확대를 통한 평가기관의 다양화 요구가 지속 제기

관련규정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고시

*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72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를 개정하여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평가실적 보유' 기준 삭제('14.11)



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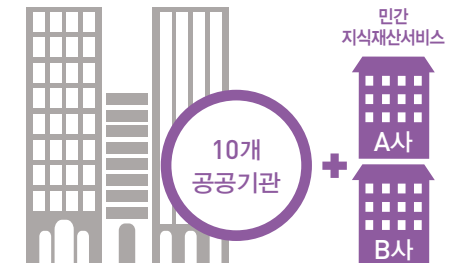
평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을 추가 지정
고시('15.6.1 시행)

개선 전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등 10개
공공기관만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

개선 후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2곳) 등을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

기대 효과

- 공공·민간부문의 건전한 경쟁 등을 통해 특허기술 평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고급 일자리 창출 기여 및 양질의 평가서비스 제공 가능
- IP 금융 활성화에 따른 IP 가치평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11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절차 개선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042-481-8243)

Q

공인인증서가 없는
출원인도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출원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후,
출원인이 서명한
포괄위임장을
전자이미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 시, 출원인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출원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어려워 불편 초래

* 포괄위임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행위

관련규정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및 제5조의2



개선 내용

종전 방식 이외에도 출원인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후 포괄위임장의
전자이미지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 다양화(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15.7.29 시행)

개선 전



|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 방식 |

①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개선 후



| 온라인 포괄위임 신청 방식 |

①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② 출원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입력후,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
위임장의 전자이미지 첨부·제출

기대 효과

• 포괄위임 관련 신청절차 다양화를 통한 출원인 편의 제고



12 손해배상 관련 특허권자 입증 부담 완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953)

Q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침해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거제출 거부도 할 수 있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A

네, 맞습니다.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소송당사자에게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이 내려져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거부 가능 등 특허권 침해에 대한 입증곤란으로 손해 배상제도의 실효성 저하

관련규정

특허법 제1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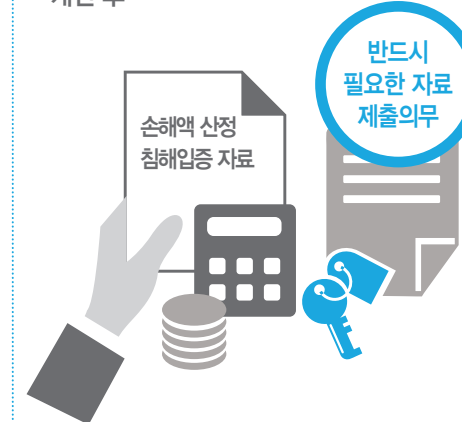
개선 내용

개선 전



- 증거제출명령은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만 인정
- 증거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출거부 가능

개선 후



- 증거제출명령은 손해액 산정 또는 침해 입증을 위한 자료로 변경
- 손해액 산정 또는 침해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일정 요건하에 제출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 효과

- 특허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신속 · 적절한 특허침해소송 실현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13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397)

Q

담당자의 실수로 특허권이 소멸되었는데,
꼭 실시 중이어야 하고, 해당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해야 권리회복이 가능한지요?



A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과제 개요

일자리 창출

문 제 점

특허권자의 불가피한 사유나 실수 등으로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
하고자 할 경우, '실시중인 특허발명'만으로 제한하고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해야만 특허권의 회복 가능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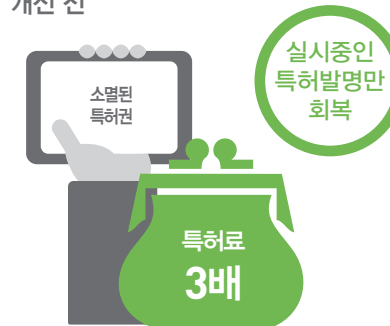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



개선 내용

사업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료의 2배를 납부
하면 소멸된 권리 회복 가능 (특허법 '14.6.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15.1. 시행)

개선 전



'실시중인 특허발명'만으로 제한하고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해야만 회복 가능

개선 후



'모든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료의 2배를 납부
하면 권리 회복 가능

기대 효과

- 불가피한 사유나 실수 등으로 소멸된 권리회복이 보다 용이해짐에 따라 안심
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복료 인화로 연간 약 4.7억원의
국민부담 경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 K씨는 직원의 실수로 특허료를 미납해, 사업 준비단계라는 이유로
특허권 회복이 안되어 무척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 개정으로 사업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소멸된 권리회복이 가능해져, 차질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 중소기업, 특허 연차 등록료 부담 완화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95)

Q

4년 이후의 등록료는 누진체제로 되어 있고
감면제도가 없어 사업화하지 못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연차등록료 완화 방안은
없는지요?



A

중소기업, 개인 등이 보유한
4~6년 특허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연차등록료 감면제도를
시행('14.3)하고 있습니다.



과제 개요

국민불편 해소

문 제 점

중소기업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경우, 최초 3년
분에 한해 감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관련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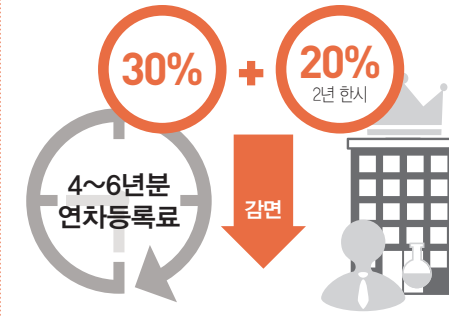
개인, 중소·중견기업 등의 4~6년분 연차등록료 30% 일괄 감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 추가 감면('18년 2월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14.3. 시행)

개선 전



최초 3년분에 한해 감면, 직무발명 보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개선 후



4~6년분 연차등록료 30% 일괄 감면, 직무
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 추가
감면

기대 효과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도입으로 '14년 3월부터 금년 8월까지 120억
정도의 유지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
만원인데,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시책에 따라 600만원 유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사는 감면되는 연차등록료 만금을
직원 복지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5 국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한·미 특허 공동심사 시행

특허청 특허심사제도와 (042-481-5400)

Q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여 한국에서는 특허등록을 받고,
미국에서는 특허가 거절되어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특허청에서는 국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미국 특허청과 특허공동심사를
금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
동일한 발명을 양국에 출원하면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인 선행기술 문헌을 양국
특허청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제도



국민불편 해소



과제 개요

문 제 점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는 해당국이 각자 결정
하여, 동일한 발명임에도 한 국가는 특허를 부여하고 다른 국가는
특허를 거절하는 일이 발생

* 미국은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



개선 내용

개선 전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개별적으로 특허부여 여부를 결정

개선 후



한국과 미국 특허청이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인정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선행기술문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사
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일반
심사건보다 우선하여 심사 처리



기대 효과

- 양국 특허청간 심사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부담 경감
또한, 조기 특허 취득이 가능해져 국내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수출 확대 기대

자동차 범퍼 생산업체 A대표는 2015년 9월 한국 및 미국에 다기능성 범퍼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후 바로 한-미 특허 공동심사를 신청하였다. 양 국가에서 쉽게 무효되지 않는 특허를
조기에 받아,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2015

특허청 규제개혁 우수사례 15선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처	 특허청
발행인	특허청장 최 동 규
기획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5208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http://www.kipo.go.kr
편집·인쇄	금강인쇄정보 TEL. 042) 526. 0311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특허청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